

1. 개정이유

2026. 10. 2.부터 공소청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) 및 개정 형사소송법(법률 제21857호, 2026. 8. 4. 공포)이 시행됨에 따라,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·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“검찰청”에서 “공소청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명 및 직인을 신고받는 주체를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에서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변경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소청법, 형사소송법, 공증인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법무부령 제 호

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전자서명) ① (생략) ② 지정공증인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속 <u>지방법원</u> <u>검</u> <u>사장</u> 에게 신고한 서명 및 직인(職印)의 인영(印影)과 동일한 이미지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	제4조(전자서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지방법원</u> <u>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